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

제정 2021.01.01
개정 2021.02.22
개정 2021.03.25
개정 2021.05.10
개정 2021.05.14
개정 2021.12.10
개정 2022.01.01
개정 2023.10.12
개정 2023.12.18
개정 2025.07.01

제 1 조(약관의 목적)

- ①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수탁자”)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 명당 1 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신탁기간이 3 년 이상일 것
 5. 총 납입한도가 1 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 \text{ 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 (\text{경과한 연수가 4 년 이상인 경우에는 4 년으로 한다})] - \text{누적 납입금액}$$

- ② 제 1 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 3 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 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을 기준 15 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 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 3 조② 항을 적용할 때 다음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 129 조제 5 항제 2 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 시행령」 제 11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보다 작은 경우

「소득세법」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나. 「소득세법」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시행령」 제 11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소득세법」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 제 1 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제 1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 분의 14 로 하여 계산한다.

제 4 조(신탁금액)

-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일만원(W10,000)으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 ③ 신탁기간(3 년 이상)동안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 억원으로 한다

제 5 조(신탁기간)

- ①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¹년으로 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3 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신탁기간 종료일 최소 20 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탁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 6 조(신탁재산의 운용)

- ① 위탁자는 [별표 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 2]의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6 조제 5 항제 3 호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¹ 3년이 넘는 범위에서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 1 항과 같이 처리한다.
- ③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④ 위탁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대리인의 지정)

- ① 위탁자는 제 6 조 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 1 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운용내역 확인 등)

-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1 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 13 조(신탁보수)

- ① 신탁보수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신탁원본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text{신탁보수} = \text{신탁원본평균잔액} \times \text{연 (0.2) \%}$$

-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차감일부터 제3 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 ③ 수탁자는 제 1 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 14 조제 1 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한다.
 1. 신탁계약일로부터 매()월이 경과한 날

2. 신탁계약 해지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3.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그 밖의 날()
-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 1 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 15 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 16 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위탁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 17 조(중도해지)

- ① 제 5 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제 16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을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 18 조(신탁계약의 종료)

- ① 제 5 조에 따른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 3 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③ 제 2 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 13 조에서 정한 보수의 일정비율로 계산한다.
- ⑤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19 조(최종계산)

-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 ②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 2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청약의 철회)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 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5 조(인감신고)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6 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7 조(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28 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9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0 조(관계법규 등 준용)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31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부 칙

- 이 약관은 2021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1 년 0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1 년 0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1 년 05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1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2 년 01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3 년 10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3 년 12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5 년 07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신탁재산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1. 내지 7.에서 정한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 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 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3. 환매조건부채권(RP) |
| 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리츠) | 5. 예금·적금·예탁금 | 6.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
| 7.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

*「소득세법」제 17 조제 1 항제 5 호의 2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정기에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에금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에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

신탁형 ISA 운용지시서^[7070]운용지시 및 매매_분산투자비용 관리



※ 최초 계약시만 작성하며 개별 운용지시 종목은 금융투자상품주문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서류 및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계약 및 계좌정보

1. 일반/전문 금융소비자 구분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권유 ☐ 희망 ☐ 불원	투자자성향	☐ 전문금융소비자
----------------------------------	--	-------	----------------------------------

2. 투자자성향 및 상품위험등급

투자자성향	성장형	성장추구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1 등급)	높은위험 (2 등급)	다소높은위험 (3 등급)	보통위험 (4 등급)	낮은위험 (5 등급)	매우낮은위험 (6 등급)

3. 현재투자자금 성향 확인

현재 투자되는 자금이 단기간 내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등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자금입니까? ☐ 예(낮은위험/매우낮은위험만 가입가능) ☐ 아니요

4. 신청사항

계좌번호	투자적합성	☐ 적합 ☐ 부적합/부적정
------	-------	--

■ 운용지시 대상 상품유형

-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리츠), 예금·적금·예탁금,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ELS·DLS(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ETN(상장지수증권), ELB·DLB(파생결합사채)을 말함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와 동일하지 않음에 유의)
- * 파생펀드 및 파생ETF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형ISA 계좌에 파생상품 ETF/ETN 매매거래 신청 후 운용지시 가능합니다.

■ 운용지시 기재란 [편입상품명, 상품위험등급, 비중은 직접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위험등급(총6단계) : 1등급_매우높은위험, 2등급_높은위험, 3등급_다소높은위험, 4등급_보통위험, 5등급_낮은위험, 6등급_매우낮은위험
* 분산투자비용 적용 상품 '예금'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은 10,000원이며, 10,000원 이하 배분시 매수되지 않습니다.

편입상품명(고객개별 운용지시분)	상품위험등급 (총6단계)	설명서교부		비중
* 고객개별운용지시분은 설명확인서가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주문표 첨부 필수	()등급	수령	거부	
	()등급	수령	거부	
	()등급	수령	거부	
소 계				100
편입상품명(분산투자비용 적용상품)	상품위험등급 (총6단계)	설명서교부		비중
	()등급	수령	거부	
	()등급	수령	거부	
	()등급	수령	거부	
소 계				
합 계				100

■ 펀드투자설명서 설명내용 투자자 확인 (분산투자비용 적용상품란에 펀드 지정시 기재)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한 설명 및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고객 요청시 투자설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설명확인증표 스캔
(2024.07.31)

설명확인	담당	팀장	지점장

■ 계약서류 교부 확인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5. 계약서류 교부 확인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및 설명서 교부방법 체크)

■ 계약서는 서면으로, 운용자산/계약(SA)설명서는 (☐ 서면 ☐ 이메일 ☐ 우편) 으로 (교 부 받 았 음)

6. 금융상품 설명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 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 음)

■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6 등급 중 (등급), (위험) 으로 최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며 조기 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 신용공여담보금 중 일부 담보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임. (단, 펀드매수예약대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상기 사항을 고객 본인이 직접 자필 기재하고 확인합니다.

계좌주(본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 대리인 기재란(위임장 검용)

대리인 성명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주(본인)와의 관계
--------	----------------------	-----	--------------

본인은 위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계좌주(본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객 권익보호 사항]

- [자료열람요구]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제공(첫날 산입)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비용 적용상품란에 펀드 지정시 기재)

■ 판매직원 설명의무 이행 확인 (음영부분은 직원 자필기재)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의 특징·위험, 적합한 투자자여부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상품의 주요내용과 상품의 위험도, 최대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음을 확 인 하였음

본인은 상기 사항을 직접 자필 기재하고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점 판매직원 직위 : 직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지점 대표번호) : 파생상품영업관리자 직위 : 직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객센터 1588-6800, 디지털투자상담센터 1644-9300)

■ 유선접수자 기재란

통화직원 성명	통화시간	연락처	비고
---------	------	-----	----

〈별첨〉

1. 제20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반환지연기간 : 철회요청일 + 3 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
- 연체이자율 : 9.9%

※ 연체이자 = 반환대상금액 X 연체이자율(9.9%) X 반환지연기간 ÷ 365 (윤년의 경우, 366일)

※본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